

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92		접수년월일	2005. 5. 19
청 원 인	주 소	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7 현대 파크빌 1003-703		
	성 명	남 상 덕 외 3,421명	주민등록번호	
소개의원	유 승 주 의 원 (한나라당, 광진구 2, 교육문화위원회)			
건 명	양진 초·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			
소 관 위 원 회	도시관리위원회			

요 지

- 광진구청에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청사 등으로 되어 있는 광진구 광장동 산 81-3번지 일대를 체육시설과 공원·녹지시설 등으로 변경을 하여, 지상에는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, 지하에는 청소차량차고지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을 신청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중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골프연습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임
  - 광진구청은 골프연습장건설 계획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음
    -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 의견청취나 공청회, 설명회, 공사안내도 없이 공사를 시행
  -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골프연습장건설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
    - 주거지역내 실외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외 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함
  - 학교보건법의 취지를 무시한 행위임
    - 위 지역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으로 학습에 방해가 되는 골프연습장 건설은 학교보건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행위이며 성동교육청에서도 우려를 표시
  -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표본임
    - 위 지역은 현재 10여 곳의 사설골프연습장이 있으나 적자와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, 워커 힐 골프연습장 등 최고시설의 골프연습장이 많이 있음.
  - 혐오시설인 청소차량차고지 건설로 인해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골프연습장 건설은 오히려 혐오시설 설치로 타당성이 결여 됨
  - 골프연습장을 사용하는 주민은 일부이므로 전체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아님
  - 자연적으로 조성된 막대한 임야를 벌목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위반됨
  - 시공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로 시공사 선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됨